

우대사항 및 제출서류

우대사항

구 분	대 상		우대(가점)		증빙방법
			1차 전형 (서류)	2차 전형 (면접)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5~10%	5~10%	• 보훈번호, 가점비율 등 정보 입력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스캔본 제출
특별	K-water 재직 중인 직원 (세부범위 참고)	2년 이상 3년 미만 근무자	5%	-	• K-water 재직증명서 스캔본 제출
		3년 이상 근무자	10%	-	
	장애인(본인) ¹⁾		10%	10%	• 장애인증명서(본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본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본인) 스캔본 제출
자격	전문 자격증 소지자 (세부범위 참고)		10%	-	• 자격증명, 자격증번호, 취득일 등 정보 입력 • 등록증서 또는 자격증서 또는 자격 취득 확인서 스캔본 제출
기타	K-water 체험형 인턴 수료자 ³⁾		5~10% 또는 면제 ²⁾	-	• 지원 시 선택 (가점 대상여부 공사 자체 확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0%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본인) 스캔본 제출
	한부모가족		10%	-	• 한부모가족 증명서(본인) 스캔본 제출
	북한이탈주민		10%	-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본인) 스캔본 제출
	다문화가족		10%	-	① 결혼이민자로서 귀화 허가를 받은 본인,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비속 중 자녀의 경우, 아래 4개 서류 스캔본 모두 제출 1. 가족관계증명서 2. 혼인관계증명서 3. 기본증명서(상세, 前 국적 표시) 4.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⁴⁾ ② 결혼이민자로서 귀화를 하지 않은 본인,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비속 중 자녀의 경우, 아래 3개 서류 스캔본 모두 제출 1. 가족관계증명서 2. 혼인관계증명서 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자립준비청년 ⁵⁾ (보호종료아동)		10%	-	• 자립수당수급자확인서 또는 보호종료확인서 또는 보호시설 퇴소 확인서 스캔본 제출

- 1) 장애 분야의 경우에는 특별가점(장애인)은 미적용
- 2) 1차 전형(서류) 면제 대상은 선발 배수에 미포함하여 합격자 선정, 단, 1차 전형(서류) 면제자도 1차 전형 점수(가점 제외)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과락을 적용
- 3) (공통) '25년·'26년 상반기(단기형) 체험형 인턴은 1차 전형(서류)의 5~10%, '24년 상·하반기, '25년 하반기·하반기(2차) 체험형 인턴은 1차 전형(서류)의 5~10% 또는 전형 면제(장애분야) '25년 사회형평(재택근무형) 체험형 인턴은 1차 전형(서류)의 5~10%
- 4) 국적 취득 당시의 국적법에 의해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발급이 불가할 경우, 제적등본 제출
- 5) 자립준비청년은 입사일('26. 11. 30.) 기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하며, 군필자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 연장(증빙서류 제출 필요)
- 6) 가점은 유리한 하나만 적용 가능, 단 법률상 가점은 중복 적용 가능

□ 세부범위

대 상	기 준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K-water 재직중인 직원	일반직, 운영직, 전문직, 특정직, 실무직, 특수직
장애인(본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K-water 체험형 인턴	2년 내 K-water 체험형 인턴 수료자 : '24년 상·하반기, '25년·'26년 상반기(단기형), '25년 하반기·하반기(2차), '25년 사회형평(재택근무형)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본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한부모가족(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북한이탈주민(본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가목, 나목의 대상자, 대상자의 배우자, 대상자의 직계비속 중 자녀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법」 제16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세부내용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국가보훈부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1조의3에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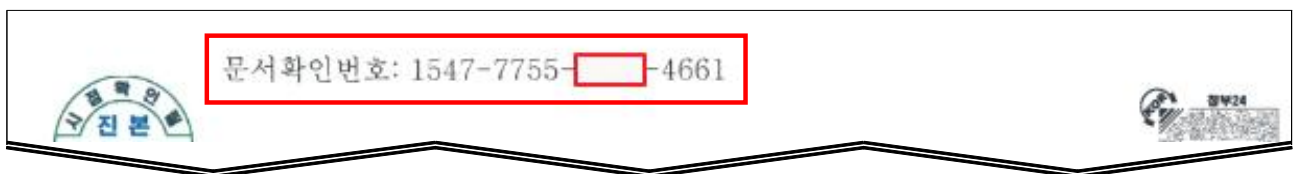
○ 전문 자격증(분야별)

분야	전문 자격증	
공통	변리사, 정보관리기술사	
행정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기술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건축사	
	기술사	가스, 건설기계, 건설안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전기설비, 건축품질시험, 공조냉동기계, 기계, 기계안전, 대기관리, 도시계획, 발송배전, 산업계측제어, 산업기계설비, 산업위생관리, 상하수도, 소방, 소음진동, 수자원개발, 수질관리, 자연환경관리, 전기안전, 전기응용, 전자응용, 정보통신, 조경,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컴퓨터시스템응용, 토목구조,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토양환경, 토질 및 기초, 폐기물처리, 화공, 화공안전

- (유의사항) 우대사항 증빙 제출서류는 관련 기관 방문 등을 통한 발급 시 진위 여부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정부24\(plus.gov.kr\)](http://plus.gov.kr)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http://efamily.scourt.go.kr)에서 '26. 8. 26.(최종 합격자 발표일 기준 90일 전) 이후 인터넷 발급한 서류만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우대사항 인정

* 단,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경우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보호시설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통해서도 진위확인 가능

- [정부24\(plus.gov.kr\)](http://plus.gov.kr) 발급문서 주요 확인 부분 : 문서 상단의 문서 확인번호를 통해 진위 확인을 하므로 반드시 **문서확인번호(16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며, 확인 불가 시 미인정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http://efamily.scourt.go.kr) 발급문서 주요 확인 부분 : 문서 하단의 발행번호를 통해 진위 확인을 하므로 반드시 **발행번호(16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며, 확인 불가 시 미인정

